

###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5. 16

#### 주요 골자

- 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 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4조내지 제17조 및 제19조 삭제).
- 나. 종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 및 기업어음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노력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령 제30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3제2항).
- 다.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함
- 라.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국사업년도를 실제로 그 손익을 배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함(령 제84조).

〈법제처 제공〉

## 개 정 이 유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8. 4. 10. 법률 제 5534호)됨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 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연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본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7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8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직접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을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으로, “금융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동조 제8항 본문·제1호·제2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의3제2항중 “직접 차입한 것(당좌차월

을 제외한다)”을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10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 제17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말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18항제1호중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총

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7조의7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중전의 제11항) 본문 및 동항 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제37조의9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이연취득가액 및 이연취득가액”을 “이연취득가액 및 과세이연세액”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48조제1항에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5항 및 제6항중 “총리령”

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제1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2호가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8항 및 제9항본문·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로 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 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증권시장 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8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조합
2. 증권투자신탁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8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10/100”을 “3/100”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중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8조의6제4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주택은행

제105조제2항중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중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

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3호중 “법 제48조”를 “법 제61조의2”로, “투자준비금”을 “준비금”으로 하며, 동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7호중 “법 제13조의3·법 제20조”를 “법 제13조의3”으로, “법 제96조·법 제97조·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5항제2호·동조제10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4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제4호·동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동조 제5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동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6호·동조제2항, 제24조제항, 제25조제1항제8호·동조제4항, 제28조제5항·제9항 본문·제1호·제2호, 제31조제6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37조의4제1항·제3항, 제37조의5제1항, 제37조의8제9항, 제37조의6제6항, 제37조의8제9항, 제37조의10제4항·제12항 본문·제1호 내지 제3호,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제1항 단서·제6항 본문·제1호·제2호, 제42조제6항·제10항 본문·제1호·제2호, 제44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

51조제7항 본문·제8항 전단·제9항 본문, 제51조의2제5항 본문,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1호나목·동조제4항, 제57조제2항 단서·동조제5항제7호·제6항 본문, 제58조제3항·제6항, 제59조제1항제3호, 제59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4항·제5항 본문, 제64조제2항·제3항 본문·제5호·동조제4항제5호, 제67조제8항 본문·제1호·제2호·동조제9항, 제68조제3항·제7항 본문 제1호·제2호·동조 제8항,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 본문·제2호, 제70조제1항제3호·동조제4항·제5항, 제71조제5항·제6항, 제71조의2제2항 후단·제5항 본문, 제1호·동조 제6항, 제73조, 제7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 제75조의2제3항·제4kd, 제75조의3제5항 본문·제8항, 제75조의4제7항·제11항, 제75조의5제3항·제7항, 제76조제2항 본문·제1호,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5제1항제1호 본문·제2호·동조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1호·제5항 본문·제6항, 제79조의2제2항, 제80조제4항·제88조의5제4항 본문·제5항제2호·제8항, 제89조제6항제11호·제9항 단서·제12항, 제89조의2제6항·제7항, 제90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동조제5항제2호·제3호·동조제10항, 제96조의3제1항제3호·제4항,

제96조의4제5호·제4항제9호·제5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5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5조제3항제2호·제37조 및 제96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의4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내지 다목·제5호나목·제10호·제13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마목·자목·파목·동표 제2호가목·다목·마목 내지 사목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제2호·제4호 및 별표 10 제10호중 “토양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

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